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
년 분기(월)실적 [] 수정 신고서
[] 기한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 내용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개별 소비세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계		㉗	
	(4) 면세세액		㉘	
	(5) 미납세세액		㉙	
	납부(환급)세액(산출세액 ㉗ - 면세 ㉘ - 미납세세액 ㉙)		㉚	
	공제(환급) 및 감면세액		㉛	
	(6)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㉜	
총 납부(환급)세액(㉚ - ㉛ + ㉜)				
교육세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환급)할세액			
농어촌 특별세	(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1)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환급)할세액			
폐업신고	폐업일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임자 (신고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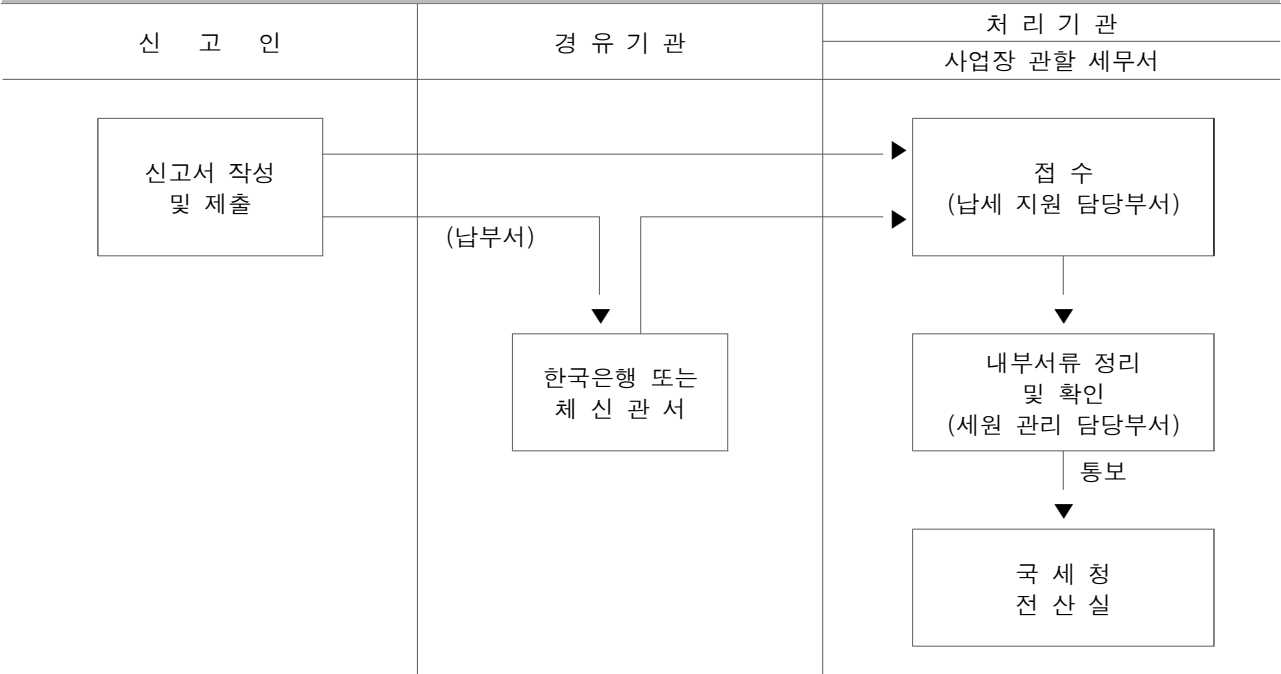
작성 방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사업장)란은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5.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란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실적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작성방법

- ① 반출구분 :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 감면 · 면세 ·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 ⑨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 ⑬ 면세 · 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 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 ⑭ 공제 · 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⑮ 납부세액: ⑫산출세액 - ⑬면세 · 미납세액 - ⑭공제 ·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⑯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 ⑰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 ⑱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 ⑲ 반출승인 · 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 · 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군납·외국인전용 판매장·조건부 면세 코드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	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수입·제조장 구입	법 §16 ① 1.	222001	수출	법 §15 ① 1.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환입·수입	법 §14 ① 2.	225002	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수입	법 §16 ① 2.	2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245022	농·임·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	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법 §16 ① 3.	2260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1	원자료·원자력·동위원소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법 §18 ① 1.
245024	도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	외국에서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법 §19 2.	227003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 칩 제작용 보석	법 §18 ① 2.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9 ③ 1.	228003	외국항공권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9 3.	2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법 §18 ① 4.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9 ③ 2.	228004	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장비품	법 §19 4.	227007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	법 §18 ① 5.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3.	228005	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8	학교·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의 사용 목적 표본 또는 참고품	법 §18 ① 6.
2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9 ③ 4.	228006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등	법 §19 6.	227009	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학술 연구용·교육용 물품	법 §18 ① 7.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접물품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영 §19 ③ 5.	228007	국가·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9 7.	2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6.	2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1	외항·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8 ① 9.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①	2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영 §19 ③ 7.	228009	가주이전 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자가용품	법 §19 9.	2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8 ① 10.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④	2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영 §19 ③ 8.	228010	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이사화물	법 §19 10.	2270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외의 소모품	법 §18 ① 11.
200006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109 ⑦	211014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반출·환입	영 §19 ③ 9.	2280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소액물품	법 §19 11.	227018	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10.	228012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광고용품	법 §19 12.	227019	여객운송·대여·환차 수송·연구용 승용차	법 §18 ① 3.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영 §14 ① 6.	228013	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해외 반출	법 §19 13.	227022	장애인용 승용차	법 §18 ① 3.
						2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공제 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4.	227023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	법 §18 ① 3.
						228015	개별소비세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5.			
						2280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을, "영"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